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I.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제조·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 협력회사 선정은 아래의 등록 요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예외로(등록 요건 기준부적합) 등록이 필요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후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협력업체 선정 평가 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기업형태	주식회사 여부
납품실적	계약 예정금액 比 실적비율

신용평가	거래기준 부합(B등급 이상) 여부	
현금흐름	거래기준 부합(보통 이상) 여부	
사무환경	사무실 존재 여부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업종구분	상품/유지보수	유통 권한 보유 여부
	SW용역	면허 보유 여부
	공사	자격/면허 보유 여부 안전평가(적격수급업체 평가적합)

〈과업 수행에 관련된 필수 자격 및 면허 보유〉

구분	필수 자격	비고
IT인프라 유통	제조사	-
	총판, 리셀러, 대리점 등 유통 자격	제조사로부터 정식 유통 자격 취득 법인
공사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격/면허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소방	일반·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문건설업	과업과 관련된 건설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나.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ItsONPurchasing(구매 포탈 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

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 기준	부당한 선정 기준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정성 여부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마.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 취소 기준	부당한 등록 취소 기준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 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 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 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⑥ 협력회사가 본 계약 수행 중 CJ올리브네트웍 스로부터 취득한 각종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 하는 경우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 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 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 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 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 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CJ올리브네트웍스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